

2019년 회계 지방세 지출보고서 (비과세·감면 현황)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분	'18년(결산)	'19년(결산)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206,533,746	209,995,883	3,462,137
비과세	50,917,385	56,423,920	5,506,535
감면	155,616,361	153,571,963	△2,044,398
지방세 징수액(B)	1,773,148,882	1,808,189,723	35,040,841
비과세·감면율(A/A+B)	10.43	10.40	△0.03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야	'18년(결산)	비중	'19년(결산)	비중	비교 증감	증감율
총 계	206,533,746	100	209,995,883	100	3,462,137	1.7
1 일반공공행정	22,202,482	10.8	27,482,259	13.1	5,279,777	23
2 공공질서 및 안전	21,550	0.0	21,632	0.0	82	0.3
3 교육	5,098,510	2.5	3,323,161	1.6	-1,775,349	△34.8
4 문화 및 관광	5,086,753	2.5	7,199,226	3.4	2,112,473	41.5
5 환경보호	835	0.0	3,377	0.0	2,542	304
6 사회복지	29,837,255	14.4	21,105,779	10.1	-8,731,476	△29.3
7 보건	334,977	0.2	533,595	0.3	198,618	59.3
8 농림해양수산	27,561,906	13.3	26,372,757	12.6	-1,189,149	△4.3
9 산업·중소기업	33,885,438	16.4	34,626,084	16.5	740,646	2.2
10 수송 및 교통	12,980,723	6.3	13,950,095	6.6	969,372	7.5
11 국토 및 지역개발	41,613,029	20.1	41,202,889	19.6	-410,140	△1
12 국가	7,225,566	3.5	7,240,623	3.4	15,057	2.2
13 외국	23	0.0	0	0.0	-23	△100
14 기타	20,684,699	10.0	26,934,406	12.8	6,249,707	3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야	'18년(결산)	비중	'19년(결산)	비중	비교 증감	비중
총 계	206,533,746	100	209,995,883	100	3,462,137	1.7
보통세	199,783,056	97	203,598,747	97	3,815,691	1.9
취득세	197,027,495	96	200,779,979	96	3,752,484	1.9
등록면허세	2,755,561	1	2,818,768	1	63,207	2.3
목적세	6,750,690	3	6,397,136	3	△353,554	△5.2
지역자원시설세	6,750,610	3	6,397,060	3	△353,550	△5.2
지방교육세	80	0	76	0	△4	△5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면 유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총 계	206,533,746	209,995,883	3,462,137
정 당 에 대 한 비 과 세	17	17	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 함 에 대 한 비 과 세	20,413,732	23,569,330	3,155,598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 함 기 부 채 납 부 동 산 에 대 한 비 과 세	1,226,067	3,293,317	2,067,25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 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3,231	24,081	85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330,779	447,365	116,586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78	55	△22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08,378	148,094	△60,284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172	137	△35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1,378	21,495	117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643	20,684	2,04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983,820	387,837	△595,983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58,314	4,280	△54,034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8	28	0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0	3	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720,858	2,825,139	△895,719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316,847	85,190	△231,657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5,009,678	6,946,870	1,937,192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71	38	△33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77,004	102,572	25,568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0	149,746	149,746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0	3,377	3,377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835	0	△8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4,228,961	3,891,097	△337,86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366	977	38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5,215,612	3,619,426	△1,596,18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405,998	996,019	590,021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0	13,641	13,641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7,193	748,352	△98,84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14,655	0	△14,655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236,964	202,839	△34,12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8,513,343	11,103,923	△7,409,4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17,050	120,768	3,718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295	127,182	110,887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239,818	281,555	41,7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84,497	533,595	249,098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50,480	0	△50,48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1,896,363	11,102,151	△794,212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250	6,214	5,964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639,788	2,480,377	△159,41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7,610,109	5,941,547	△1,668,5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129,276	102,014	△27,262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55,034	61,775	6,74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49,677	234,625	84,948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025,580	2,105,518	79,93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186,728	3,385,206	1,198,478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75,281	1,017	△74,264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93,820	952,313	158,49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853,295	5,343,165	1,489,870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4,143	233	△43,910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365	0	△3,365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7,428	86,649	69,221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5,611,765	4,021,428	△1,590,33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64,327	28,507	△35,82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2,575,035	2,605,433	30,398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35,435	15,532	△19,903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596	32,129	29,53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0	5,187	5,187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503	1,449	△54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260	26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1,676,546	22,486,112	809,56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967	0	△1,967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400	0	△1,40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2,979	82,260	59,281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5,242,936	4,560,267	△682,669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6,583,165	8,072,248	1,489,083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104,763	1,015,380	△89,383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3,513	219,940	196,427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004,924	1,339,070	334,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633,941	962,807	△5,671,13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268	389,880	385,61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1,328,624	37,861,397	6,532,77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3,117	0	△13,117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810,343	649,735	△160,608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817,812	0	△1,817,812
국가에 대한 비과세	6,984,574	6,998,302	13,72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00,550	201,270	72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0,442	41,051	609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23	0	△23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9,500,224	5,725,979	△3,774,245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6,339	53,874	7,535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743,392	1,829,778	86,38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8,155,214	18,082,735	9,927,521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561	0	△561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671,543	910,348	238,805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78,828	67,217	△11,611

감면 유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6,639	3,250	△3,389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461,667	207,018	△254,64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6,908	50,528	33,62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384	3,679	295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22,202,482	27,482,259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20,413,732	23,569,330
		취득세	18,012,763	21,004,593
		등록면허세	132,531	71,478
		지역자원시설세	2,268,438	2,493,259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1,226,067	3,293,317
		취득세	1,226,067	3,293,317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3,231	24,081
		지역자원시설세	23,231	24,081
4	정당에 대한 감면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17	17
		등록면허세	17	17
5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330,779	447,365
		취득세	241,560	356,578
		등록면허세	7,472	7,976
		지역자원시설세	81,747	82,81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6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표지에 대한 비과세 - 표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표지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278	55
		취득세	242	0
		지역자원시설세	36	55
7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경감하고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의 부동산의 경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 - 지방공단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208,378	148,094
		취득세	195,567	137,421
		등록면허세	12,811	10,673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21,550	21,632
8	경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경생보호공단 등의 경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172	137
		취득세	172	137
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21,378	21,495
		취득세	21,184	21,207
		등록면허세	173	266
		지역자원시설세	21	22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교육		합 계	5,098,510	3,323,161
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983,820	387,837
		취득세	841,513	240,173
		등록면허세	1,706	3,097
	지역자원시설세	140,601	144,567	
11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58,314	4,280
		취득세	58,314	4,280
12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8	28
		지역자원시설세	28	28
13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0	3
		지역자원시설세	0	3
14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3,720,858	2,825,139
		취득세	2,496,144	1,595,524
		등록면허세	5,583	5,857
		지역자원시설세	1,219,131	1,223,758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15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18,643	20,684
		취득세	0	15,300
		등록면허세	71	9
		지역자원시설세	18,572	5,375
16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316,847	85,190
		취득세	290,318	54,634
		지역자원시설세	26,529	30,556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5,086,753	7,199,226
17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5,009,678	6,946,870
		취득세	4,286,520	6,191,365
		등록면허세	1,556	1,900
		지역자원시설세	721,602	753,605
18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단체·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71	38
		지역자원시설세	71	38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19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77,004	102,572
		취득세	61,287	91,552
		지역자원시설세	15,717	11,020
20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증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⑥)	소 계	0	149,746
		취득세	0	149,746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835	3,377
2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835	3,377
		취득세	835	3,377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9,837,255 21,105,779
2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4,228,961 3,891,097
		취 득 세	4,228,961 3,891,097
23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366 977
		취 득 세	1,277 899
		지역자원시설세	89 78
24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239,818 281,555
		취 득 세	120,495 166,655
		등록면허세	6,734 1,685
		지역자원시설세	112,589 113,215
25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5,215,612 3,619,426
		취 득 세	5,215,612 3,619,42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2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405,998 996,019
		취 득 세	398,313 988,171
		지역자원시설세	7,685 7,848
27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6)	소 계	0 13,641
		취 득 세	0 13,641
2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인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847,193 748,352
		취 득 세	843,317 744,430
		지역자원시설세	3,876 3,922
		지역자원시설세	3,876 3,922
29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236,964 202,839
		취 득 세	236,964 202,839
3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소 계	18,513,343 11,103,923
		취 득 세	17,801,765 11,076,188
		지역자원시설세	711,578 27,735
		지역자원시설세	711,578 27,73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3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지대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17,050	120,768
		등록면허세	117,050	120,768
32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소 계	16,295	127,182
		취득세	16,295	127,182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보건		합 계	334,977	533,595
33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284,497	533,595
		취득세	284,443	533,541
		등록면허세	54	54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7,561,906	26,372,757
34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소 계	11,896,363	11,102,151
		취득세	11,885,539	11,091,672
35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등록면허세	10,824	10,479
		소 계	250	6,214
취득세	250	6,214		
36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소 계	2,639,788	2,480,377
		취득세	2,639,788	2,480,37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3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7,610,109	5,941,547
		취 득 세	7,394,010	5,706,836
		등록면허세	216,099	234,711
38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소 계	129,276	102,014
		취 득 세	129,276	102,014
39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소 계	55,034	61,775
		취 득 세	49,801	47,247
		등록면허세	9	18
40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149,677	234,625
		취 득 세	137,606	224,910
		등록면허세	12,071	9,715
41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2,025,580	2,105,518
		등록면허세	2,025,580	2,105,518
42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소 계	2,186,728	3,385,206
		취 득 세	2,186,728	3,385,20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43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 가공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직접사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75,281	1,017
		취 득 세	75,281	1,017
44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793,820	952,313
		취 득 세	793,820	952,313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3,885,438	34,626,084
45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 2호)	소 계	3,853,295	5,343,165
		취 득 세	3,830,500	5,305,606
		등록면허세	22,795	37,55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46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소 계	44,143	233
		취 득 세	44,143	233
4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건물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64,327	28,507
		취 득 세	64,327	28,507
4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소 계	0	260
		등록면허세	0	260
4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소 계	35,435	15,532
		취 득 세	35,435	15,53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5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2,575,035	2,605,433
		취 득 세	2,575,035	2,605,433
51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0)	소 계	2,596	32,129
		취 득 세	0	27,954
		등록면허세	2,596	4,175
5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0	5,187
		취 득 세	0	5,187
53	광업 지원을 위한 경감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소 계	1,503	1,449
		등록면허세	1,503	1,449
54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21,676,546	22,486,112
		취 득 세	21,676,546	22,486,11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55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8호)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17,428	86,649
		취 득 세	381	85,126
		등록면허세	17,047	1,523
56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5,611,765	4,021,428
		취 득 세	5,611,765	4,021,428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2,980,723	13,950,095
57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소 계	22,979	82,260
		취 득 세	22,979	82,260
58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5,242,936	4,560,267
		취 득 세	5,242,936	4,560,267
59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2018.12.31.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12.31.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6,583,165	8,072,248
		취 득 세	6,583,165	8,072,248
6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1,104,763	1,015,380
		취 득 세	1,104,763	1,015,380
6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23,513	219,940
		취 득 세	23,513	219,94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1,613,029	41,202,889
62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1,004,924	1,339,070
		취 득 세	1,004,924	1,339,070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1~3호) -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4~5호)	소 계	6,633,941	962,807
		취 득 세	6,633,941	962,807
6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차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4,268	389,880
		취 득 세	4,268	389,880
6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소 계	31,328,624	37,861,397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임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취 득 세	31,328,624	37,861,397
		소 계	810,343	649,735
66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조례)	취 득 세	810,343	649,735
		소 계	810,343	649,735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국 가		합 계	7,225,566	7,240,623
6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 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 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6,984,574	6,998,302
		취 득 세	5,674,106	5,612,112
		등록면허세	36,531	35,095
		지역자원시설세	1,273,937	1,351,095
6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00,550	201,270
		취 득 세	200,550	201,270
6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 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40,442	41,051
		지역자원시설세	40,442	41,051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기 타		합 계	20,684,699	26,934,406
7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 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78,828	67,217
		취 득 세	1,104	650
		지역자원시설세	77,724	66,567
71	신택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9,500,224	5,725,979
		취 득 세	9,500,224	5,725,97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72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지방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 례제한법 §73③)	소 계	46,339	53,874
		취 득 세	46,339	53,874
7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세율특례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743,392	1,829,778
		취 득 세	1,743,392	1,829,778
74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 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 세법 §26② 1호)	소 계	8,155,214	18,082,735
		취 득 세	8,155,151	18,082,735
		등록면허세	63	0
7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 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 한법 §66①)	소 계	671,543	910,348
		취 득 세	550,045	759,329
		등록면허세	121,498	151,01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8년(결산)	'19년(결산)
7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소 계	6,639	3,250
		취 득 세	5,014	1,525
		지역자원시설세	1,625	1,725
77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461,667	207,018
		취 득 세	461,667	207,018
7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16,908	50,528
		취 득 세	16,908	50,528
7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3,384	3,679
		등록면허세	3,187	3,467
		지방교육세	80	76
		지역자원시설세	117	136